

김춘환

공인노무사 2차 시험대비
강의계획서

교수

민사소송법

GS0순환 주말반

“김춘환 민소법만 믿고 오십시오. 고득점을 보장합니다!”

강 사

김춘환 교수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민사법 전공)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Ph.D, 민사법 전공)
-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 전문가 특강 강사(민법, 민소법)
-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이사(회장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단기 민사법 대표 교수
- 월비스 한림법학원 공인노무사 민사법 전임교수

일 정

2022년 9/17(토) ~ 12/17(토), 총 14회

※ 매주 토요일 진행

실강 저녁 6:30 ~ 10:00

교 재

- 주교재 : 「2022 수험 민사소송법 입문」
- 부교재 : 공인노무사 적중 단문, 사례 자료(제공) + 시험장용 법전
※ 개강일에 공인노무사 시험용 법전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질 문 답 변

- 카페 : 김춘환민소법, cafe.daum.net/chunzivilprozess

강의 소개

□ 민사소송법에 대한 수강생 Q & A

1. 공인노무사가 민사소송법을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 신청 · 보고 · 진술 · 청구(이의신청 ·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등을” 행하는 전문자격사(공인노무사법 제2조 참고)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구제절차 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위 절차 등에 대한 기본법은 민사소송법이므로, 이를 공부하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2. 하지만 어차피 선택과목이고, 선택과목은 점수득점 면에서 유리해야 하는데, 다른 과목보다 불리하지 않나요?

공인노무사 민소법은 선택과목이므로, 출제위원들이 수험생들이 많은 선택을 하기 위해, 좋은 득점을 안겨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민소 “법”은 다른 “학”과는 달리 분명히 답이 정해져 있어, 열심히만 하면 누구나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적은 받을 수 있는 과목이므로, 결코 다른 과목보다 불리하지 않고 오히려 유리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표준점수제가 도입되어 있으므로, 민소법을 응시한 사람 중에서 상위권에 속하면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3. 그러면 민사소송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민소법은 절차법이므로, 절차의 흐름에 따라, 그 흐름에서 문제되는 중요주제들을 위주로 이해, 숙지할 해야 합니다. 다만 문제형식의 면에서 제1문은 CASE가 출제되고 있으므로, 제 교재, 단문자료 등을 숙지하되, 간단한 사례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이해나 수험준비 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수업시간에는 간단한 사례를 풀어드립니다.

4. 꼭 김춘환 강사를 선택해서 들을 필요가 있나요?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 교재를 제가 처음 출간했고, 지난 14년간 강의를 처음으로 하였으므로, 공인노무사 수강생 분들에 대한 이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노무사 시험에 관한 누구보다 맞춤형 강의를 할 수 있고, 대학원에서 민사소송법을 전공하여 가장 정통한 강의를 한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강사를 믿고 끝까지 따라오면 민소법에서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의 진행

1. 민사소송법이란?

“민사” “소송” “법”은 사인간의 분쟁에 대해(즉 민사사건) 당사자가 법원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사권의 존재를 확정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국가 입장에서는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제도(민사소송)를 규정한 절차법을 말합니다.

2. 민소법 공부는 조문이 중심

민소법 교재는 교과서든 수험서든, 우리나라가 성문법 국가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상 성문법전에 대한 해석론이 그 주를 이룹니다.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므로 조문이 민사소송절차의 순서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평 시에는 항상 해당 진도에서 문제되는 조문을 먼저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석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진도표	회차	일정	강의내용
	1	9/17(토)	오리엔테이션, 민사소송절차 개요 및 중요 조문 해설, 공인노무사 시험 분석
	2	9/24(토)	1. 소송과 비송의 한계-과거의 양육비 청구 2. 민사소송과 신의칙 -신의칙 위반의 행위에 대한 판단(辨 34) 3. 민사소송에서 재판권의 인정여부 4.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본안절차 정지에 관한 치유여부(辨 39) 5. 관할 - 당사자거동에 의한 관할(합의관할(第 10회), 변론관할, 司 34, 50, 55, 第 11회) 6. 이송결정의 구속력(司 41)
	3	10/1(토)	7. 당사자 확정[사망자당사자소송(辨 40, 司 50, 54, 法 15, 第 11회), 법인격부인] 8. 당사자능력(비법인사단과 조합의 당사자능력, 司 50) 9. 당사자적격[이행의 소에 있어 당사자적격(司 46, 47, 法 13), 확인의 소의 피고적격(司 54), 제3자 소송담당(辨 1)과 채권자대위소송(司 39, 41, 43, 48, 53, 54)]
	4	10/8(토)	10. 소송능력(소송무능력과 흠결시의 법원의 조치)(辨 44) 11. 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비교(司 40) * 파기환송 후 소송대리권의 당연부활 여부 - 심급대리원칙, 파기환송판결의 성질(司 37) 12. 소송행위에 있어 표현대리법리의 인정여부, 무권대리인(司 55) 13. 변호사법 위반의 소송행위의 효력
	5	10/15(토)	14. 소송요건에 대한 판단자료수집방법과 소송요건의 선순위성(司 54) 15. 장래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司 43, 48, 法 14) 16.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대상적격, 즉시확정의 이익(法 13) 17. 소송물이론-내용, 식별기준, 상대성인정여부(司 28, 41, 51, 53, 54) * 소장의 기재사항,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무변론판결(司 45, 57)
	6	10/22(토)	18. 중복소제기의 금지-상계의 항변(辨 46, 司 53), 채권자대위소송(司 43, 54 法 12), 채권자취소소송(法 16) 19. 중복소제기의 금지-단일청구에 대한 확인청구과 이행청구(辨 42) 20. 소제기의 실체법상 효과-피고의 방어방법과 시효중단 21. 공개심리주의 - 영업상, 사생활의 비밀(司 53) 22. 처분권주의의 심판의 대상과 범위 - 형식적 형성의 소(司 44, 56, 辨 44) 23.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처분권주의(辨 44) 24. 처분권주의- 단순이행청구에 대한 상환이행판결(司 45, 49) 25. 처분권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辨 41) 26. 변론주의에서의 사실의 주장책임[간접적 주장인정여부(司 44, 52),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司 47, 第 10회),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 포함여부(司 51, 57), 석명권(第 11회)] 27. 지적의무(시사의무)- 석명권과의 관계(司 51)
	7	10/29(토)	* 적시제출주의, 이의권 * 변론준비절차(준비서면) 28.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 - 부인과 항변의 구별(司 42, 48, 57) 29. 소송에 있어 형성권의 행사 - 소송상 상계의 항변(辨 46) 30. 소송상의 합의-소송계약의 성질(辨 45, 司 56) 31. 소송행위의 하자와 그 취소 여부(辨 40, 司 51) 32. 변론기일에 있어 당사자의 결석 - 기일의 해태(司 45, 47, 57, 法 13) 33. 무변론판결(司 45) * 추후보완제도, 송달(司 55) 34. 소송절차의 중단-당연승계의 인정과 수계절차의 의미(司 54, 56)

회 차	일 정	강의 내용
8	11/5(토)	35.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의 증거력(司 37) 36. 불요증사실- 재판상 자백(司 50, 53), 현저한 사실 *유일한 증거(辨 47) 37. 서증 - 문서의 증거력의 추정(司 50, 52, 助 9), 서면증언의 특례(司 46) * 증인에 대한 감치제도의 신설 38. 문서제출명령(司 47) 39. 당사자신문 - 보충성의 폐지 * 증거보전(辨 46)
9	11/12(토)	40. 변론전체의 취지의 독립적 증거원인성 41. 자유심증주의(助 1)-증명방해(입증방해)의 문제 42. 증명책임의 분배와 원화(司 45) 43. 간접반증-일응의 추정의 복멸(辨 39) 44. 소송종료선언(司 43) 45. 재소금지- 당사자동일((司 48), 소송물 동일의 문제 46. 재소금지-소의 교환적 변경과의 관계(司 52) 47. 소송상 화해의 효력-기판력의 제한적 인정여부(司 39) 48. 화해권고결정
10	11/19(토)	* 판결의 의의 및 종류, 기속력(판결의 경정), 형식적 확정력 49. 변론종결(표준시)뒤의 형성권의 행사(司 49, 助 10회) 50.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기판력의 시적한계(司 43, 49) 51. 변론종결전의 법률관계-기판력의 표준시 52. 기판력의 작용-선결관계(司 52)와 모순관계 53. 판결이유 중의 판단의 구속력 인정여부(辨 43, 司 52) 54.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辨 39) 55.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변론종결전의 승계인과의 비교(辨 38, 司 56) 56. 판결의 반사효의 인정여부 57. 판결의 무효-상소의 대상적격 58. 판결의 편취-소송법상 구제책(司 40, 55) 59. 판결의 편취-집행시의 구제책과 실체법상 구제책(司 40) * 가집행선고, 소송비용
11	11/26(토)	60. 단순병합과 예비적 병합 - 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의 성질(辨 43) * 선택적 병합 - 판결이유가 다른 경우의 항소심법원의 판단(辨 46) 61. 예비적 병합 - 양립불가능성의 요건여부(辨 46) 62. 예비적 병합에서의 일부판결의 허부(司 46, 辩 46) * 예비적 병합과 불이익변경의 원칙(司 51회) 63. 청구기초의 동일성의 개념 64. 교환적 변경의 경우의 피고의 동의여부 65. 청구의 변경의 간과-법원의 처리방법 66. 중간확인의 소-선결성의 요건의 의미 67. 항소심에서의 반소-상대방의 동의가 불요한 경우(司 46) 68. 반소요건 등의 조사 - 반소요건의 흡결시의 조치

회 차	일 정	강의 내용
12	12/3(토)	69.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의 수정증거공통, 주장공통의 원칙 인정여부(司 38, 45, 47, 53, 56, 第 1) 70. 고유필수적·유사필수적·통상공동소송의 판단기준(司 38, 45, 47, 52, 57, 第 11회) 71.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개정전의 상황과 현재의 규정(司 46, 49, 53, 55) 72. 소의 주관적·추가적 병합의 인정여부(司 49, 57) 73. 선정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의 의미 74. 선정당사자-심급을 한정한 선정의 인정여부 75. 선정당사자-선정 후의 선정자의 지위
13	12/10(토)	76. 보조참가-소송의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보조참가의 이익)의 의미(第 45) 77. 보조참가-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사법상의 권한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78. 보조참가-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의 성질(司 50) * 공동소송참가(第 10회)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비교(司 48) 79. 소송고지-소송고지의 효과(司 51, 第 9) 80. 독립당사자참가-이중매매의 경우에 권리주장참가의 가능여부 81. 독립당사자참가-사해방지참가의 '권리침해'의 의미 82. 독립당사자참가-판결에 대한 상소의 문제(司 50) 83. 임의적 당사자 변경 - 일반적 허용여부와 법적성질(司 51) * 소송승계(당연승계, 특정승계- 참가승계, 인수승계, 司 56)
14	12/17(토)	84. 상소권포기의 가능여부 85. 불상소의 합의-직권조사사항여부 86. 상소의 이익-상소의 이익의 판단기준(司 44) 87. 상소불가분의 원칙(司 51, 57) 88. 항소의 취하-소 취하와의 비교(司 51) 89. 부대항소-부대항소의 성질(司 51) 90.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司 51) 91. 환송판결의 기속력(司 42, 55) *특별항고(法 11) 92. 재심의 소-법 제451조 제4호 내지 제7호의 의미 93. 재심의 소에 있어 중간판결 94. 간이소송절차(소액사건, 독촉절차) 95. 공시최고절차

* 실제 진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